주 문

1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[redacted] 작성 증서 [redacted]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15,779,983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.

2. 이 법원이 [redacted]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[redacted].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1항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하고,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.

3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25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